

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성수 의원 발의】



2023. 8. 28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2호로 2023년 8월 11일 이성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
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,
취미 활동,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
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
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구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프로그램 개발 등 보조금 지원 등(안 제5조의2)
- 라. 보조금 지원 등(안 제6조)
- 마.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(안 제6조의2)
- 바. 정산 등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8. 8. ~ 2023. 8. 12.)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, 취미 활동,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

- 안 제2조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,
- 안 제6조의2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 사회에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 및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에 의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노인복지법

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
2. 도로의 교통정리, 주·정차단속의 보조,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
3. 충효사상,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
4.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
- 4의2.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
5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

2

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18조(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
2.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
3.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
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
2.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
3.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